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5

발의연월일: 2024. 6. 5.

발 의 자:김태호·박대출·김성원

박정하 · 강민국 · 박충권

김위상 · 임이자 · 곽규택

백종헌 • 윤영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서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와 같이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 훈련·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초지 방자치단체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대상에서 제

외되어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하고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불과 11.3km 거리에 있는 경상남도 양산시는 경상남도에 원자력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9 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2항). 법률 제 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관할"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은 제외한다)"을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군"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2에 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은 제외한다)
- 나. 해당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 군으로서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이 아닌 시·군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관할"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 할하는 자치구(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제외한다)"를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구"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자치구(해 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 나. 해당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자치 구로서 해당 특별시·광역시의 관할구역이 아닌 자치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	③
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	
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u>관할</u> 시·군에 각각	<u>해당</u>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	
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시・군 및 제29조의2제2	
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2
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u>「원자력시설</u>	<u>다음 각 목</u>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u>· 군</u>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은 제외한다)	
<u><신 설></u>	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신 설>

④ (생략)

-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생 략)
 -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같은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 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군에 균등 배분한다.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하이 조 및 제29조의2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

- 나. 해당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하는 시·군으로서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이 아닌 시·군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현행과 같음)

(2)
<u>해당</u>

- 1. (생략)
-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자치구(해당 원자력발전소가있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신 설>

③ (생략)

 1. (현행과 같음)

 2.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치구

- 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자치구(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 나. 해당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하는 자치구로서 해당 특 별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이 아닌 자치구
- ③ (현행과 같음)